



중국 티엔푸 콜라그룹공사 (총칭) VS 총칭 바이스티엔푸 음료 유한공사, 바이스(중국) 투자유한공사 기술비밀 분쟁 사건

28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총칭시 제5중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9)渝五中法民初字第299号
판결 일자	2010년 11월 23일	판결 결과	청구 일부인용 (권리자 일부 승)
원고	중국 티엔푸 콜라그룹공사 (총칭)		
피고	1. 총칭 펙시티엔푸 음료 유한공사, 2. 펙시(중국) 투자 유한공사 (외국계 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 사건심리 법률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 제9조, 제10조, 제11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참조 판례			
영업비밀 키워드 (Keyword)	콜라 원료의 배합방법 및 생산 공정		

02 사건 개요

원고 중국 티엔푸 콜라그룹공사(이하 '티엔푸 콜라그룹')은 콜라 제조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다. 원고 티엔푸 콜라그룹과 펙시콜라 국제공사의 자공사가 합작 투자하여 피고 총칭 펙시티엔푸 음료 유한공사(이하 '펙시티엔푸 공사')를 설립하였다. 원고 티엔푸 콜라그룹의 출자범위 안에 콜라의 제조방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펙시티엔푸 공사는 장기간 원고 티엔푸 콜라그룹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비밀인 콜라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콜라를 생산하였다.

원고 티엔푸 콜라그룹은 2006년 피고 펙시티엔푸공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을 피고 펙시(중국) 투자 유한공사(이하 '펙시(중국)공사')에 이전하였는데, 피고 펙시(중국)공사가 실질적으로 펙시티엔푸 공사를 조정하여 주주 권리를 남용하였으므로, 원고 티엔푸 콜라그룹은 양 피고가 연대하여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원고	⇔	⇐	피고
본 사건은 권리침해 분쟁이므로, 중재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사건은 계약분쟁이므로, 계약서 중재약정에 따라 중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원고는 상업비밀에 대한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였다.			원고는 상업비밀에 대한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원고의 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피고들은 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04 판결 요지

충청시 제5중급인민법이 사건을 수리 한 후, 피고 웨시티엔푸공사의 관할권 이의를 기각했으므로, 관할권은 이미 정해졌다. 계약서의 중재약정에 따르더라도,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은 상업비밀 권리 확인 소송 및 권리침해소송이므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먼저 주체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권리확인소송과 권리침해소송은 동시에 심리할 수 있다.

티엔푸콜라 농축액 (을) 재료의 성분, 처방, 및 생산공정은 콜라 생산의 핵심 부분으로 비공지성, 경제적 이익, 실용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비밀보호를 위하여 계약의 양측 모두 비밀보호 협약을 맺고, 비밀보호 조치를 두고, 서류보관실도 따로 마련하였으며, ‘극비’ 표시를 하고, 관련 없는 직원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밀보호 조치도 취하였으므로, 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한다.

본 사건에서 관련 상업비밀의 권리소유자는 여전히 원고 티엔푸콜라 그룹이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권리소유자로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관련 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합작계약에 관련 상업비밀 사용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없으며, 분쟁이 발생할 때까지, 원고가 사용료 주장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무료로 상업비밀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본 사건 판결 전에 피고가 관련 상업비밀을 사용한 것은 합법적인 사용이며 권리침해가 아니다.

그렇지만, 원고 티엔푸콜라 그룹은 본 사건 소송을 제기하며, 권리자 신분으로 피고들의 상업비밀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상업비밀 사용 허락 문제에 대한 협상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상업비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피고들은 상업비밀 사용을 중단한 후 원고로부터 획득한 상업비밀 관련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불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권리자인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05 Key Point

콜라 제조방법이라는 영업비밀을 둘러싼 중국기업과 외국계 합자기업간의 분쟁이다. 양 당사자 간에 권리의 주체와 범위 등을 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나, 법원이 양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판결에서 법원의 '당사자 의사해석'은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본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지만, 당사자가 불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